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홍 보 관 리 관 실

02) 503-7011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주 책 임 자	상사팀장 이두식	02) 502-4127
---------	----------	--------------

담 당 자	검사 강해운	02) 502-4128
-------	--------	--------------

제 목 : 상법 보험편이 16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생명보험금의 절반은 압류 금지』

- ◆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7. 30.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 개정방향은 ①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②보험 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④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임

□ 개요

-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보험대국에 진입함에 따라 상법 보험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07. 7. 27.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였음
- 『상법 보험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성태 교수)』 활동 등 약 2년에 걸쳐 개정작업 추진

□ 주요 개정사항(별첨 주요 개정사항 참조)

①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사기 방지 규정 신설
- 상해보험에 있어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화 규정 신설

②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 반영

- 보증·질병 등 신종계약 규정 신설
-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 규정 신설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④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의 효과 구체화
- 보험금 분할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공청회 개최

- 8. 17. 14:00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학계, 변호사, 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

□ 향후 추진 일정

-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 '07. 8.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07. 9.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 법무부는 작년 초에 해상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금년 7.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현재 회사편 개정작업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보험편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작업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1) 상법 보험편 개정안 주요 내용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주요 내용

①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의 2, 제657조의 2)

-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일부 규율

※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피해금액은 23,607건 1,802억원(금융감독원 자료),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추정 보험금은 2004년 기준 1조 3천억원에 이름(보험개발원 자료)

- 독일 및 프랑스 보험계약법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적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1월 내에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함으로써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
 - 보장보험은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음(보장보험의 속성에 따른 결과)을 명문화
 - 생명보험 등 인적보험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②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화 규정 마련(안 제737조의 2)

- 현재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제739조, 제732조의 2)
-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어도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에 대한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인정
- 이는 범죄를 조장하고 전체 보험가입자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무면허운전 등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영향이 없음

②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① 보증·질병 등 신종계약 규정 신설(안 제726조의 5 내지 7, 제 739조 2 내지 4)

- 현행법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증보험¹⁾, 질병보험²⁾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약관에 의하여만 규율되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
 - 특히, 민간보험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질병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증가 중
- ※ 2006. 9. 현재 질병보험 계약건수·계약금액은 약 2,370만건·412조원으로 생명보험계약의 30.4% 및 27.9%를 차지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은 각 보험계약법에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권리·의무와 면책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1)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

2) 질병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 상해 이외에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건강보험의 대표적인 예임

②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 2)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이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많음
-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 보험대리점에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권(채약대리점에 한정),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한 인정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 보험증권 교부권한 인정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①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 현재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
 - ※ 제732조의 입법취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의 소지를 예방하고 본인을 보호하는데 있음
 - 가벼운 정신장애를 가진 심신박약자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고, 이들이 가장인 경우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려고 하는 절실한 희망까지도 무시되는 결과 초래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는 허용(대리에 의한 가입만 금지)

- 개정안은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 즉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심신박약자가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안 제734조의 2)

- 현행법은 생명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생명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

※ 민사집행법, 국제징수법이 봉급을 1/2까지만 압류하도록 하는 예에 따라 2분 1/2로 정함

③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682조 제2항)

-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 즉 보험대위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금을 결국 보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 아들의 과실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불을 낸 경우 아버지는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지만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는 아들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결국 화재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게 됨

- 독일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의 배상청구권이 그와 가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대위권을 배제하고 있음
-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보험자 보호

4]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개선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화(안 제638조의 3)
 -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 · 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나,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보험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시 효과 구체화(안 제722조)
 - 현행법은 책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침묵
 - 보험계약자가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거나 보험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던 경우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함

● 보험금 분할 지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658조의 2)

- 현행법은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만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지급은 생명보험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손해보험도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분할지급이 보험자는 물론 계약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고, 보험 실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보험편 통칙 규정에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모든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